

대전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14579(본소), 2021나1458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여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조아라, 문현철)

변 론 종 결 2022. 4. 6.

판 결 선 고 2022. 4. 27.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13. 선고 2021가합100628(본소),

2021가합100635(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06,459,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70,970,3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44,398,0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970,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공정증서 및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제14-15행의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가 지급했어야 할 원고 거주 숙소의 임대인 N에게”를 “피고는 당초 원고가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 직원 거주 숙소의 임대인 N에게”로 고침

○ 제10면 제12행 다음에 “(또한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한 원금에 대하여 변제를 못하게 되자,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이자를 월 30%로 인상하면서 지연된 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의 요구로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와 차용증서의 금액이 10억

원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원고에게 장기매매 또는 인신매매할 것처럼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 및 현금차용증서, 영업허가권 명의변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은 피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협박에 의하여 공정증서나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한편, 피고가 고리의 이자를 차용증서상의 원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계산하여 과도한 채무원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공정증서나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며, 달리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처분문서인 공정증서와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공정증서나 차용증서상의 원금을 전부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문서인 공정증서 및 차용증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함

2.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2014. 10. 10.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가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였는데, 그와 같이 정산한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급여 15,970,000원, 주류대금 345,000원, 유흥주점 월 차임 19,500,000원, 원고의 숙소 월차임 2,882,000원, 전기요금 5,823,140원을 대납하고 원고의 채권자 M에게 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의 합계 44,520,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10. 10. 정산 합의 이후 지출한 금원은 유흥주점 정상화의 일원으로 지급한 추가 투자금이므로 익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영업자의 지위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이라면 그와 관련한 비용을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 1) 먼저 2014. 10.분 임료 및 전기요금, 채권자 M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2014. 10. 29.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임료 1,300,000원(2014. 10.분), 2015. 2. 12. 전기요금 281,990원(2014. 10.분), 2015. 11. 20. 원고의 채권자 M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0,000원 합계 6,581,99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¹⁾
 - 2) 다음으로 피고가 구하는 나머지 종업원 급여 등의 대위변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3, 6, 9, 15, 50,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10. 10. 정산합의를 할 무렵 이 사건 유흥주점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2015. 4. 30.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0. 정산합의 무렵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양수인을 찾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16. 3. 20.이어서 비록 원고가 위 정산합의 무렵 사실상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양수인을 구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차임지급의무가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④ 원고와 피고의 정산합의 이후 2014. 11.까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넘겨받아 사실상 단독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인 2015. 12.경부터 다시 유흥주점의 정상운업을 재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2014. 12.분부터 2015. 11.분까지 전기사용량은 정상영업하던 때의 1/8 내지 1/10 정도에 불과하여 위 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2014. 10. 10. 정산합의 이후

지급한 금원 전부가 당초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 주류대금 및 차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특히 L회사에 송금한 내역 중 2015. 11. 18.자 송금액 345,000원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재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구하는 유흥주점 및 숙소의 월차임 중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을 재개한 시점의 차임이 포함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앞서 1)항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종업원 임금, 주류대금 및 차임 전부가 당초 원고의 채무로서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581,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차용금 및 부당이득금 합계 406,459,882원(= 399,877,892원+6,581,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명, 판사 모성준, 판사 이혜성

1) 원고는 피고가 2014. 10. 10. 정산합의 이후 지출한 금원은 투자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원고가 2014. 10. 10.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폐업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차용금에 대해서 정산을 마치고 새롭게 4건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양수인을 물색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고가 영업 안정을 꾀하기 위한 재투자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지출한 금원이 재투자를 위한 금원이므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